

사회문제연구소 규정

제정 2013. 02. 28

제1조 (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안전을 유지, 증진함에 기여할 높은 역량의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전인적 전문인 양성과 경동대학교 경찰학과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 내에 ‘사회문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Social Problem)(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연구원) ①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의 경찰학과 및 관련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 연구교수 및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종료시 임용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

③ 상근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1년이며 활동이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찰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사업.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이론의 개발과 현실 사회에 활용 방안 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매체 제작.
5. 연구지 발간 및 출판사업.
6. 기타 경찰 및 사회문제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장등) ① 연구소에 소장 및 부소장을 두되,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

제6조 (연구팀)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지원팀장)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은 연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지원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촉 연구 교수 및 위촉 연구원) ①위촉 연구교수는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로 구분하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특정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경력이 적은 사람은 위촉 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촉 연구원 및 위촉 연구교수는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사무원) 이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사무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이 본 대

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 사항)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
3.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
4. 연구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
5.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 및 수탁 과제비
2.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3. 본 대학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

제15조 (연구비 및 관리비)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예산, 결산) ① 이 연구소의 예산편성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